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성일종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205 발의연월일: 2021. 1. 7.

발 의 자:성일종・이태규・조수진

김희국 · 장제원 · 이 영

이명수 · 홍성국 · 김태흠

서범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는 수목원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에 관하여 법적 근거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.

현재 64개의 수목원 중 국공립수목원 및 사립수목원 2~3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수목원의 경우, 재정이 열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제외한 별도의 수익사업에 관하여 법적 근거가 없어 입장료, 간이휴게점 등의 수익으로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.

더욱이 코로나19의 여파로 관람·견학 및 체험학습프로그램 등의 취소가 이어지면서 매출이 급감하였으며,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면서 수목원의 경영위기상황 또한 장기화되고 있음.

이에 수목원의 관리·운영상 자생력을 키우는 동시에 경영상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는 데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수익 사업에 대한 근거규정을 두고자 함(안 제11조의2 신설 및 제12조제1 항).

법률 제 호

수목원 ·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수익사업)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(이하 "등록수목원"이라 한다) 및 국립수목원은 수목원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

- 1. 간행물의 제작 · 판매
- 2. 전시품 및 기념품의 제작·판매
- 3. 탐방객을 대상으로 하는 숙박시설의 설치 · 운영
- 4. 매점, 식음료 매장, 기념품 판매시설 등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
- ② 그 밖에 수익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제12조제1항 중 "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(이하 "등록수목원"이라 한다)은"을 "등록수목원은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1조의2(수익사업) ① 제9조제1
	항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(이하
	"등록수목원"이라 한다) 및 국
	립수목원은 수목원 관리・운영
	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목적
	으로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
	<u>할 수 있다.</u>
	1. 간행물의 제작·판매
	2. 전시품 및 기념품의 제작・
	<u>판매</u>
	3. 탐방객을 대상으로 하는 숙
	<u>박시설의 설치·운영</u>
	4. 매점, 식음료 매장, 기념품
	판매시설 등 편의시설의 설
	<u>치・운영</u>
	② 그 밖에 수익사업 운영 등
	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
	품부령으로 정한다.
제12조(개원 및 휴원) ① <u>제9조제</u>	제12조(개원 및 휴원) ① <u>등록수</u>
1항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(이	<u>목원은</u>
하 "등록수목원"이라 한다)은	
연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	
하는 일수 이상을 일반인이 이	

용할 수 있도록 개원하여야 한	
다.	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